

솔루엠 인권경영 기본 원칙

2024년 5월 17일 제정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솔루엠은 인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솔루엠의 가치 및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권 존중 약속

솔루엠 인권 기본원칙(이하 "원칙")은 국제인권장전(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으로 구성),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장에서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 원칙에 관한 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UN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등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솔루엠이 진출한 국가의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대외 선언입니다.

솔루엠은 인권 존중이 사업에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일이며 기업으로서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솔루엠의 영향 범위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은 경영활동을 통해 인권 침해에 연루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특히 이주근로자, 연소근로자, 여성 등을 포함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함으로써 개인 또는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솔루엠의 협력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이와 동일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은 인권에 대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원칙은 솔루엠 임직원과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솔루엠은 협력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지, 예방,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 원칙

솔루엠은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솔루엠은 경영 환경 혹은 사업분야의 변화에 따라 주요 인권 영향 분야의 우선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 인권 영향 분야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체 점검, 제3자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1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강제노동 금지

입사 및 고용유지를 위한 수수료, 비용, 채무노동,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등 근로자의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실 및 식수 등 휴게시설, 외부 의료시설, 공장, 기숙사 등의 출입 및 이용 등 이동에 제약이 없다. 이는 솔루엠과 거래하는 계약업체, 인력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협력회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아동노동 금지

15 세 미만(또는 현지 국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 연령기준이 엄격한 경우, 현지국가 법률 적용)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는 솔루엠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당사의 국내외 사업장과 협력회사는 신규 입사자의 연령검사 등 엄격한 입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다. 15 세 미만의 아동 근로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연소자 근로

18 세 미만 연소자(학생, 인턴, 실습 및 견습생 포함)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5 근로시간

솔루엠은 근로시간에 대한 ILO 협약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 휴게시간과 휴일은 본 방침과 국제 표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정한다.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구성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솔루엠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임금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생활을 위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7 차별금지 및 다양성 포용

솔루엠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차별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임신 및 결혼 상태, 정치적 신념, 성 정체성, 출신 지역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하지 아니며,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업무진행, 퇴직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차별을 근절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솔루엠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솔루엠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징계 및 구제조치를 진행한다.

9 결사의 자유

솔루엠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책임있는 광물의 조달

솔루엠은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3TG, 코발트 등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인접국가를 비롯한 위험지역 및 분쟁영향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환경적 책임

솔루엠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식합니다. 솔루엠의 환경 전략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동작 및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험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공정한 전환 과정에 기여하고 폐기물 배출, 수질 및 대기오염 등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당면한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개인 정보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솔루엠은 개인 정보 보호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개인 정보 및 데이터의 무단 접근, 사용, 파괴, 수정, 공개로부터 솔루엠의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솔루엠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투명성, 보안, 개인의 선택에 기반한 개인 정보보호 원칙 및 해당 국가의 법규를 반영한 국가별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제공되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최적의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13 인권 옹호자 존중

솔루엠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개인, 단체 및 사회기관(이하 인권옹호자)을 존중한다. 전세계적으로 인권옹호자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위협, 협박, 보복,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인권 옹호자와 협력하여 안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14 협력회사의 책임

솔루엠은 다수의 위험, 특히 심각한 위반 행위가 공급망의 하위 계층에서 주로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협력회사와 협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환경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협력회사 행동 규범의 실행을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솔루엠



Solution Provider

은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협력회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강제 근로 및 아동 근로, 이주근로자에 대한 위험, 안전 및 보건 기준, 환경, 현지 임금 및 근로시간 법 등을 가장 핵심적인 인권 위험으로 초점을 맞추어 관리합니다.

본 기본원칙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업계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솔루엠은 임직원 및 공급망, 협력회사들이 솔루엠의 인권 기본원칙에 최고 수준으로 부합하도록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솔루엠의 경영진은 이러한 기대 수준을 임직원들에게 소통하고 기준에 부합해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2024. 5. 17.